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목 차>

과태료 부과기준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작성자	이름	이영평
	담당부서 (과)	금융제도팀		직급	5급
	국장	도규상		연락처	02-2100-2842
	과장	홍성기		이메일	ypyunglee@korea.kr

금융정책국장

도규상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과태료 부과기준																	
	2.규제조문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9조, 별표8																	
	3.위임법령	금융지주회사법 제72조 제3항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17.5.23.~7.3.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input type="checkbox"/>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한도가 약 2배 인상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과태료 기준금액에 이를 반영 <input type="checkbox"/> 과태료는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질서벌이므로 부과금액 등을 법령으로 규정할 필요																	
	7.규제내용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을 인상하고,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업권별 기준금액에 차등을 최소화																	
	8. 피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유형</th> <th>인원수 또는 규모</th> <th>의견 수렴방식</th> <th>의견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피규제자</td> <td>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등 금융회사, 금융지주회사 등의 임직원 등</td> <td>금융감독원 수검대상 회사 및 임직원 등</td> <td>입법예고</td> <td>-</td> </tr> <tr> <td>이해관계자</td> <td>금융소비자 및 관련 단체, 금융감독원 등</td> <td>-</td> <td>입법예고, TF 운영(금융감독원)</td> <td>-</td> </tr> </tbody> </table>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 수렴방식	의견 내용	피규제자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등 금융회사, 금융지주회사 등의 임직원 등	금융감독원 수검대상 회사 및 임직원 등	입법예고	-	이해관계자	금융소비자 및 관련 단체, 금융감독원 등	-	입법예고, TF 운영(금융감독원)	-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 수렴방식	의견 내용														
피규제자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등 금융회사, 금융지주회사 등의 임직원 등	금융감독원 수검대상 회사 및 임직원 등	입법예고	-															
이해관계자	금융소비자 및 관련 단체, 금융감독원 등	-	입법예고, TF 운영(금융감독원)	-															
9.기대효과	금전제재의 실효성 제고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행정질서벌 또는 행정제재 처분에 관련된 내용이므로 대안별 비용·편익 분석을 생략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해당 없음																	

거. 법 제5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검사 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72조 제1항 제7호	기관 개인	5,000 2,500
너. 법 제54조의 규정 에 위반하여 업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 성한 경우	법 제72조 제2항 제2호	기관	500
더. 법 제55조의 규정 에 위반하여 공고 를 하지 않거나 허 위로 공고한 경우	법 제72조 제2항 제3호	기관	500
러. 법 제56조의 규정 에 위반하여 공시 를 하지 않거나 허 위로 공시한 경우	법 제72조 제2항 제4호	기관	500
머. 장부·서류의 은닉, 부실한 신고 기타 의 방법에 의하여 법에 의한 검사(법 제51조의2에 따른 검사는 제외한다) 를 기피 또는 방해 한 경우	법 제72조 제2항 제5호	기관	1,000
		개인	500
버. 금융지주회사등의 임직원으로서 법에 의한 서류의 비치· 제출·보고·공고 또 는 공시를 게을리 한 경우	법 제72조 제2항 제6호	개인	200
서. 금융지주회사가 법 또는 법에 의한 규정·명령 또는 지 시를 위반한 경우	법 제72조 제1항 제8호	기관	1,000
어. 법 또는 법에 의 한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	법 제72조 제2항 제7호	기관	200
		개인	100

<삭 제>		자	
너. -----를 ----- ----- ----- -----	제1항 제8호	법인 인 자	6,000
더. -----를 ----- ----- -----	제1항 제9호	법인 인 자	6,000
러. -----를 ----- ----- -----	제1항 제10 호	법인 인 자	6,000
머. ----- ----- 신고, 그 밖 의 방법에 따라 법 에 따른 검사를 거 부·방해 또는 기 피한 경우	제1항 제11 호	법인 인 자	10,000
		법인 이 아닌 자	5,000 다만, 임직 원의 경우 에는 2,000 만원 으로 한다.
버. ----- ----- ----- -----		법인 이 아닌 자	-----
서. ----- ----- -----	제1항 제12 호	법인 인 자	2,000
어. ----- ----- -----		법인 인 자	400
		법인	200

우(금융지주회사는 제외한다)				----- -----		이 아 닌 자	
--------------------	--	--	--	----------------	--	------------	--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배경)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한도가 약 2배 인상*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개별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에 이를 반영

* 법인 5천만원 → 1억원, 개인 1천만 → 2천만원

- (정부개입 필요성) 과태료는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질서벌이므로 부과금액 등을 법령에 규정할 필요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제재에 관한 사항을 금융위원회의 소관사무로 규정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대안의 내용) 법 개정('17.10.19일 시행)으로 과태료 부과한도가 2배 인상(법인 1·5천만원 → 1억원, 개인 1천만원 → 2천만원)됨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된 개별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을 인상*

-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업권별 기준금액의 차등을 최소화**하여 제재의 형평 제고

* 원칙 : 법인 1억원, 임직원 2천만원, 임직원 외 대주주 등 개인 5천만원

** 위반의 중요도에 따라 법률상 부과한도액의 100%, 60%, 30%, 20% 등 금액으로 규정하는 현행 시행령상 기준금액 체계를 원칙으로 적용

(예시) 대주주 거래 관련 이사회 의결의무 위반시 법률상 최고한도액의 100%, 업무 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시 법률상 최고한도액의 60% 등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과태료 기준금액 개정안 >

(단위: 천만원)

위반의 중요도	부과 사유	법상 한도 ¹⁾	부과대 상 ²⁾	현 행	개 정
100%	한도초과주식 처분명령 위반	10	법인	3	10
			개인	1.5	5
	대주주와의 거래 관련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금융지주회사등		법인	5	10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의무 위반		법인	5	10
			개인	2.5	2 임원
	검사 거부·방해 또는 기피		법인	5	10
			개인	2.5	5 임직원 2
	60%		유사상호 사용 금지의무 위반	법인	3
자본금 감소 및 정관 변경시 금융위에 대한 사전 신고의무 위반		개인	1.5	3	
		법인	1.5	6	
주식보유한도,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신용공여한도 관련 자료제출 요구 불응		법인	3	6	
		개인	1.5	3	
대주주와의 거래 관련 금융위에 보고 또는 공시의무 위반		법인	3	6	
비은행지주의 자회사등인 보험회사의 대주주와의 거래 관련 사전 보고의무 위반		법인	3	6	
업무보고서 미제출, 허위 작성		법인	0.5	6	
재무제표 미공고, 허위 공고	법인	0.5	6		
경영공시 미공시, 허위 공시	법인	0.5	6		
30%	인가대상 금융지주회사의 보고의무 위반 등 사후 보고의무 위반	법인	1.5	3	
		개인	1.5	1.5	
10·20%	금융지주회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규정·명령·지시 위반	2	법인	1	2
	금융지주회사등 임직원이 이 법에 따른 서류 비치·제출·보고·공고·공시 태만		개인	0.2	0.2
			법인	0.2	0.4
	금융지주회사 외의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규정·명령·지시 위반	개인	0.1	0.2	

1) '17.10월 시행 예정인 금융지주회사법 기준 / 2) 개인은 '법인이 아닌 자'를 의미

□ (선택 근거) 과태료 기준금액 인상은 금융회사의 자율성·책임성 제고를 위해 추진한 「제재개혁」(15.9월)*의 일환

* 금융지주회사법 개정(17.10.19일 시행)으로 과태료 부과한도가 인상

- 규제대안은 과태료 금액을 인상하고 업권간 형평을 맞추는 것으로 제재의 실효성·형평성 측면에서 현행유지안보다 우위
- 행정력 투입 수준 대비 위반행위 억제력 등 과태료 부과한도 인상의 효과 측면에서도 규제대안이 현행유지안보다 우위

□ 한편, 과태료 부과금액 인상으로 인해 금융회사 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일부 우려가 있으나

- 업권 규모 및 타 기관 사례에 비해 경미했던 금전제재를 현실화 하는 수준이고
- 과태료 인상 수준도 전체적인 측면에서 타 법 사례에 비해 높은 수준이 아니므로 규제의 강도가 크게 높아진다고 보기 어려움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실무진과 TF를 구성하여 3차례 회의 등을 통해 의견 수렴	특이사항 없음
금융회사 등	시행령 입법예고로 의견 수렴	진행중

3. 기대 효과

“숨방망이 금전제재”가 사라지고 제재의 실효성 제고

- 대형 금융사고·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에도 금전제재 금액이 턱없이 낮아 “숨방망이 제재”라는 비난이 많았음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의 과태료 기준금액을 인상함으로써 금전제재 제도의 실효성 제고 기대

업권마다 상이한 종류·금액의 금전제재를 통일적으로 개정하여 금융업법간 형평성 제고

- 동일·유사 위반행위에 대해 업권간 제재 유형이나 수준이 다른 문제

⇒ 동일·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동일한 제재가 부과되도록 업권별 제재 형평성을 제고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규제목적) 금융회사 및 임직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금전제재 강화를 통해 유사 위법행위를 억제하여, 금융회사의 신뢰성, 금융시장 안정성 및 금융소비자 보호 등 편익을 제공

(규제수단) 과태료 부과금액이 증가할 수 있으나, 공정거래법 등 타업권 및 해외 사례 등에 비추어 과도한 수준으로 보기 어려움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해당사항 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영국·미국 : 영국은 Financial Penalty, 미국은 Civil Money Penalty의 단일 구조로 우리나라의 과태료·과징금에 해당하는 금전제재를 부과

○ 우리나라는 과태료·과징금이 적용되는 영역·부과요건·부과금액 등을 구분하고 있으나,

○ 영국과 미국은 금전제재 부과사유를 개별적으로 열거하지 않고 “법령 또는 감독청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액부터 고액까지 부과 가능

- 영국은 부과금액의 상한이 없으며*

*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에서 “it may impose on him a penalty of such amount as it considers appropriate”으로 규정

- 미국은 위반행위 정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위반행위 기간 1일당 상한액을 규정

* 위반행위 1일당 (1단계) \$7,500 / (2단계) \$37,500 / (3단계) \$1,425,000

- 미국이나 영국은 금융당국의 폭넓은 재량권 하에 거액의 금전제재를 부과해 옴

· '16년 세계 최대은행인 웰스파고에 대해 고객명의 무단도용 등 사유로 CFPB(미연방 소비자금융보호국)가 \$1억(1천억원), OCC가 \$3.5천만(3.5백억원), LA City가 \$5천만(5백억원)의 민사제재금을 부과

- '13년 미국 금융당국은 JP모건에 대해 신용과생상품 투자관련 리스크관리 부적정 등 사유로 SEC가 \$2억(2천억원), FRB가 \$2억(2천억원), OCC가 \$3억(3천억원)의 민사제재금을, 영국 금융당국은 £1.4억(2천억원) 등의 민사제재금을 부과
- '11년 SEC는 내부자 거래 관련 캘리언 펀드 설립자 라자라트남에 대해 부당이득인 \$5천만(5백억원)의 약 2배에 가까운 \$9천만(9백억원)의 민사제재금을 부과

□ 독일·일본 :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관련 법률에서 금전제재 부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

- 독일은 과태료·과징금을 구분하지 않고, Bußgeld라는 단일 금전제재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법률로 상한액을 설정(최대 100만유로)
-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과태료·과징금*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 사유에 대해서는 위반법인을 대상으로 한 고액의 벌금형(최대 30억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 일본은 금융상품거래법 및 공인회계사법에만 과징금을 규정하고 있음

○ 타법사례

□ 공정거래법 시행령 비교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상 과태료 기준금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과 비교하더라도 매우 낮은 편
 - 공정거래법은 허위 공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거나 공시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 시행령에서 최대 7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
 - * 조사 거부·방해·기피행위는 법률상 부과한도인 2억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 반면, 금융지주회사법은 시행령에서 최대 5천만원의 과태료 기준금액을 정하고 있음

□ 금융법 사례 분석

① 현행 금융법 시행령상 과태료 기준금액은 최대 5천만원으로 금융회사의 위반행위를 제재·억제하기에 부족한 수준*

* '15년 과태료 부과금액: 기관 33.6억원(건당 12백만원), 개인 29.2억원(건당 5백만원)
 '16년 과태료 부과금액: 기관 35.6억원(건당 16백만원), 개인 24.5억원(건당 6백만원)

⇒ 법인인 자 최대 1억원, 법인이 아닌 자(임직원 등) 최대 5천만원 수준으로 과태료 기준금액이 인상되도록 금융지주회사법 등 11개 주요 금융법* 시행령을 일괄적으로 개정 추진중

* 금융지주·은행·보험·자본시장·지배구조·여전·저축은행·신탁·신용정보·전자금융·대부업법

② 동일·유사 위반행위에 대해 상이한 과태료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는 문제를 시정하여 업권간 제재 형평을 제고

- (예시) 경영공시의무 관련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은 타 금융법에 비해 기준금액이 낮으므로 동일 수준으로 형평을 제고하되, 경영 투명성 등 중요성에 비추어 전반적으로 시행령상 기준금액을 상향

구 분	현 행	개정안
금융지주법 시행령	과태료 5백만원	과태료 6천만원
은행법 시행령	-	
자본시장법 시행령	과태료 1천만원	
보험업법 시행령	과태료 3.5천만원	
여전법 시행령	1.5천만원(미공시) 5천만원(허위공시)	과태료 3천만원

Ⅲ. 규제 의 실효성

1. 규제 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과태료 기준금액 인상은 금융회사의 자율성·책임성 제고를 위해 추진한 「제재개혁」(15.9월)의 일환

- 강화된 규제로 인해 발생할 과태료 금액도 타기관, 해외 사례에 비해 높은 수준이 아니므로 규제의 강도가 크게 높아진다고 보기 어려워 피규제자의 비준수 가능성은 낮음

○ 규제 차등화 방안

□ 과태료는 동일 권역의 기관 등이 행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제재가 적용됨

2. 규제 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금번 개정안은 과태료 기준금액을 인상하는 것에 불과함

- 또한, 기존의 과태료 산정체계 하에서 인상된 기준금액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추가적인 인력 소요 없음

○ 재정적 집행가능성

□ 기존의 과태료 산정체계 하에서 인상된 기준금액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추가적인 예산 소요 없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과태료 기준금액 인상은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발표한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15.9월)의 후속조치임
- 방안 발표 후에도 피규제대상자인 금융회사 임직원을 상대로 2차례(15.12월, '16.10월)에 걸친 제재개혁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심층인터뷰 등)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련 의견을 청취·수렴하였음

2. 향후 평가계획

- 제도 운영 과정에서 일부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보다 합리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추가 보완책 등을 검토할 예정

3. 종합결론

- 금번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은 금융회사의 자율성·책임성을 강화하는 「제재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의 신뢰성 및 금융 소비자 보호 수준을 제고하는 정책 목표 달성 기대